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사유(주소불명, 폐문 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대 상: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70번**** / 12다52** / 최해* 외 987건
(붙임 내역서 참조)
- 공 고 내 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0. 5. 1.~2020. 5. 31. 우편 반송분)
- 공 고 기 간: 2020. 6. 1.~2020. 6. 15. (15일간)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중구청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606-7929)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붙임: 의견진술서 양식)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과 [(042) 606-688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 기일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진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인적사항			- -
주소			
위반일시	년 월 일 :	차량번호 / 차종	
위반장소		연락처	

	아래 진술유형 중 해당하는 곳에 ✓ 표 하세요.	첨부서류
()	• 응급환자 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	• 장애인(중증 보행장애)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인적사항, 동행여부입증서 류
()	• 중증장애로 보행에 제약받는 자가 주차시설 없는 곳 이용	위반장소 방문 한 객관적 입증자료
()	• 장애인 주차 가능 국가유공자가 주차시설 없는 곳 이용	국가유공자등, 자동차표지 사본
()	• 현저한 보행장애 고령환자 진료 돕고자 주차시설 없는 곳 이용한 경우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 주행 중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불법주차 이후 발생한 차량고장은 면제사유에서 제외	보험사 긴급출동요청내역서, 차량견인내역서, 차량점검정비내역서
()	• 교통사고 현장의 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	교통사고접수내역
()	• 응급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한 경우(불명 증상으로 긴급을 요했던 경우) - 당시 진료한 의사의 소견 을 고려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명용)
()	• 1.5t이하 화물차량 허용범위(10시~17시, 15분)내인 경우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 등
기타	•	

진술내용

년 월 일
진술자 : (인)

중 구 청 장 귀 하